

2026. 9.

인도 델리 고등법원, ANI v. OpenAI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 생성형 AI 학습과 저작권법상 공정 취급(fair dealing)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교수
손한기

1. 개요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2026년 7월 24일 뉴스통신사 ANI Media Pvt. Ltd.(이하 'ANI')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ANI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사건번호는 CS(COMM) 1028/2024이며, 2024년 11월 19일 쟁점이 정리된 이래 21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2026년 3월 27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Amit Bansal 단독판사가 135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판단하였다. 심리에는 인도출판인연맹·디지털뉴스발행인협회·인도음악산업협회 등 ANI 측 3개 단체와 Flux Labs AI·IGAP Project·Broadband India Forum 등 OpenAI 측 3개 단체가 소송에 참가하였고, 법정조언자(amici curiae) 2인도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결정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을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뉴스 저작물을 저장·이용한 행위와, AI가 생성한 출력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인도 저작권법의 공정취급 조항과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주요 사법 판단으로 평가된다.

ANI는 OpenAI가 자사의 뉴스 기사 등을 허락 없이 수집·저장하여 ChatGPT의 학습에 이용하고, ChatGPT가 자사 기사와 유사한 응답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ANI는 학습·이용의 중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반면 OpenAI는 학습을 위한 저장은 인도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a)의 공정취급(fair dealing)에 해당하고, ChatGPT의 출력은 ANI 저작물의 복제가 아니라고 다투었다.

법원은 이 사건이 본안판결이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단계라는 점을 전제로, 학습을 위한 저장의 침해 여부, ChatGPT 출력물의 침해 여부, 제52조 제1항 (a)의 공정취급 적용 여부 및 관할을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OpenAI의 행위가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ANI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주요내용

1) 학습용 저장과 공정취급

법원은 OpenAI가 ANI의 문학저작물을 LLM 학습을 위해 전자적으로 저장한 행위가 인도 저작권법 제14조 (a)(i)의 복제권¹⁾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즉, 학습을 위한 디지털 저장을

저작권법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술적·일시적 행위로 보아 처음부터 복제권의 범위 밖으로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그와 같은 저장이 제52조 제1항 (a)의 공정취급²⁾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일응 보았다. 제52조 제1항 (a)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에 관한 공정취급으로서, 연구를 포함한 사적 또는 개인적 이용 등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특히 2012년 개정으로 추가된 설명(Explanation) 조항은 위 목적을 위한 전자적 매체에서의 저작물 저장 자체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데, 법원은 이 조항이 AI 학습을 위한 전자적 저장 문제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판결은 처음 설정된 쟁점에 'fair use'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제52조의 법문과 인도법의 체계상 판단 대상은 'fair dealing'이라고 명확히 하였다.

법원은 공정이용 취급 여부를 목적 요건과 공정이용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LLM의 학습은 정보의 분석·처리와 지식의 생성에 관한 연구적·기술적 활동으로 볼 수 있고, OpenAI가 영리기업이라는 사정만으로 제52조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나아가 학습 데이터 자체가 일반 이용자에게 그대로 제공되지 않는 점, ANI와 OpenAI의 서비스가 동일한 시장에서 직접 경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ANI가 구독자 감소나 매출 손실 등 구체적 손해를 충분히 보이지 못한 점, 그리고 AI의 연구·교육·정보 접근 및 지식 확산에 관한 공익을 함께 고려하였다.

다만 이 판단은 모든 생성형 AI 학습을 포괄적으로 적법하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 사건의 자료를 토대로 OpenAI의 저장이 일응 제52조 제1항 (a)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본안에서는 이용의 범위와 목적, 저작권자에 대한 경제적 영향, 출력물의 구체적 재현 여부 등에 따라 다른 결론이 가능하다.

2) AI 출력물의 기억·재현과 실질적 복제

법원은 학습 단계의 이용과 ChatGPT 출력 단계의 침해를 별도의 쟁점으로 다루었다. ANI는 ChatGPT가 ANI의 기사를 학습하여 기억하고 이를 재현하거나, 검색증강생성(RAG)을 통하여 ANI 콘텐츠를 이용한 응답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ANI가 제출한 출력 사례만으로는 ChatGPT가 ANI 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을 기억·재현(memorisation/regurgitation)하였거나 실질적으로 복제(substantial re-

1) 인도 저작권법 제14조 (a)(i): "(a) 어문·연극 또는 음악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제외)의 경우, (i) 전자적 수단에 의한 매체 저장을 포함하여 어떠한 유형적 형태로도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원문: "(a) in the case of a literary, dramatic or musical work, not being a computer programme,— (i) to reproduce the work in any material form including the storing of it in any medium by electronic means...", CS(COMM) 1028/2024, para 71.)

2) 인도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a) [2012년 개정, 현행]: "컴퓨터프로그램이 아닌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목적을 위한 공정취급: (i) 연구를 포함한 사적 또는 개인적 이용, (ii) 그 저작물 또는 다른 저작물에 대한 비평 또는 논평, (iii) 시사 및 시사문제의 보도(공개 강연의 보도 포함). 설명—본 항에서 정한 목적을 위한 전자적 매체에서의 저작물 저장은, 그 자체로 침해물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의 부수적 저장을 포함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원문: "(a) a fair dealing with any work, not being a computer programme, for the purposes of — (i) private or personal use, including research; (ii) criticism or review, whether of that work or of any other work (iii) the reporting of current events and current affairs, including the reporting of a lecture delivered to public. Explanation.—The storing of any work in any electronic medium for the purposes mentioned in this clause, including the incidental storage of any computer programme which is not itself an infringing copy for the said purposes, shall not constitute infringement of copyright.", CS(COMM) 1028/2024, para 160.)

production)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예컨대 ANI가 제시한 대표 사례 중 하나는 2024년 파리올림픽 창던지기 은메달리스트 니라지 초프라(Neeraj Chopra)의 모친 인터뷰 기사였다. ANI는 '정확히(exactly) 무엇이냐 말했는지 알려달라'는 이른바 적대적 프롬프트(adversarial prompt)를 통해 ChatGPT로부터 원문에 가까운 인용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인터뷰 발언에 대하여 인도 저작권법 제17조 단서 (cc)³⁾의 근본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발언 자체에 관한 저작권이 이를 보도한 ANI가 아니라 발언자 본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ChatGPT의 응답은 인용된 부분 외에는 독자적인 설명과 맥락을 추가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나아가 GPT-4의 학습 데이터 종료일은 2022년 4월, GPT-4o는 2024년 4월인데, ANI가 제시한 9개 예시 기사는 모두 이 시점 이후인 2024년 8~9월에 게시된 것이었다. 법원은 해당 기사들이 모델의 학습 종료일 이후에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그 기사들에 관한 학습 데이터 기반의 기억(memorisation)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해당 응답을 학습 데이터에 기초한 기억·재현의 결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단순한 사실, 사건의 경과, 일반적 정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표현 자체와 구별되어야 하며, 유사한 사실을 다루는 응답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RAG와 관련하여서도 법원은 검색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응답이 곧바로 학습 데이터의 기억·재현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법원은 RAG를 통해 생성된 출력물도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잠정적으로 비침해라고 보았다(판결문 제271항). 다만 RAG를 통한 실시간 검색·제공행위 자체가 별도의 침해를 구성하는지는 소장에 명시적으로 청구되지 않아 본안에서 추가로 다뤄야 한다는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판결문 제65.5항). 이에 따라 이 결정은 AI 출력물이 언제나 비침해라는 뜻이 아니라, 특정 출력과 특정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및 재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관할과 가처분 판단

OpenAI는 모델 학습과 저장이 미국 서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인도 법원이 이를 판단할 관할이 없고, 인도 저작권법을 역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NI의 주된 사무소가 델리에 있고, ANI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전송이 인도에서 이루어진 뒤 해외 서버의 저장으로 이어졌으며, OpenAI 서비스가 인도 이용자에게 제공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ANI 저작물의 인도 내 접근과 해외 전송, 해외 서버에서의 저장을 연속적인 사건(chain of events)으로 파악하였다. 해외 서버 저장은 이러한 연속적인 사건의 최종 단계에 불과하므로, 서버 소재만을 근거로 인도

3) 인도 저작권법 제17조 단서 (cc): "공개적으로 행해진 연설 또는 발언의 경우, 그 연설 또는 발언을 한 자(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가 저작권의 최초 귀속자가 된다..." (원문: "(cc) in the case of any address or speech delivered in public, the person who has delivered such address or speech or if such person has delivered such address or speech on behalf of any other person, such other person shall be the first owner of the copyright therein...", CS(COMM) 1028/2024, para 106.)

내에서 시작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인도 저작권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또한 법원은 가처분 인용의 요건인 일응의 추정사건(prima facie case),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형평의 우위(balance of convenience)를 검토하였다. ANI는 2024년 9월 OpenAI에 법적 통지(legal notice)를 보냈다. OpenAI는 ANI 웹사이트를 자사 크롤러의 차단목록에 등재하였다. 이후 2024년 10월 3일 ANI는 OpenAI에 라이선스 계약을 제안하였으나, OpenAI는 이를 거절하였다. 법원은 ANI가 구체적인 구독자·매출 감소를 입증하지 못한 점과 더불어, ANI 스스로 OpenAI에 약 750만 달러(USD 7.5 million)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제안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ANI가 주장하는 손해가 금전배상으로 산정·회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irreparable injury) 요건 판단에 불리하게 고려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AI 발전 및 정보 접근에 관한 공익을 종합해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3. 결론 및 시사점

ANI v. OpenAI 결정은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를 '학습을 위한 복제·저장'과 '출력물의 재현·시장대체'로 나누어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원은 학습용 저장이 복제권과 관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도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a)의 공정취급을 통하여 그 침해 성립을 잠정적으로 부정하였다. 동시에 출력물과 관련해서는 모델이 원저작물을 기억하여 재현했다는 점, 그리고 보호되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복제되었다는 점을 저작권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을 '인도가 AI 학습을 전면 허용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가처분 신청에 관한 일응의 판단이며, 인도 저작권법상 공정취급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같은 포괄적 공정이용이 아니라 제52조에 열거된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제도이다. 특히 학습 데이터의 성격과 접근 방식, 저작물 이용의 규모, 저작권자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AI 출력의 구체적 재현성과 대체성에 따라 향후 본안이나 다른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서도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출력물의 침해를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습 단계에서는 복제의 성격, 이용 목적, 데이터 확보 방식 및 시장 영향이 중요하며, 출력 단계에서는 원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과 재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또한 인도 사건이 보여주듯이, 해외 서버나 글로벌 서비스라는 사정만으로 관할 및 준거법 문제가 단순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규정과 AI 학습 데이터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에도, 기술적 과정·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공익 및 혁신 간의 균형을 다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 https://delhihighcourt.nic.in/app/showFileJudgment/ABL24072026SC10282024_171649.pdf
- <https://www.sconline.com/blog/post/2026/07/27/openai-chatgpt-training-on-ani-content-protected-under-fair-dealing-dhc/>
- <https://spicyip.com/2026/07/ani-v-openai-user-rights-fair-dealing-and-the-future-of-ai-in-indian-copyright-law-part-i.html>
- <https://spicyip.com/2026/07/ani-v-openai-user-rights-fair-dealing-and-the-future-of-ai-in-indian-copyright-law-part-ii.html>
- <https://www.livelaw.in/articles/narrow-escape-openai-544856>